

의견제출서

1. 처분예정 제목		간호조무사 자격 자격정지 행정처분		
2. 당사자	성명		(직종)자격번호	
	주민등록번호		현재 근무 의료기관명, 주소	
	처분서 수령 방식	☐ 우편 ☐ 전자우편 (전자우편 선택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4조의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)		
	우편수령가능 주소			
	전자우편주소			
3.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받은 훈장, 포장, 표창 (대통령, 국무총리, 보건복지부 장관상만 해당)				
4. 사법처리내용		법원 또는 검찰청 사건번호		
		사법처리결과 및 일자		
5. 처분일자 및 의견제출				
6. 연락 가능한 연락처		- 전화번호 : - 휴대폰(H.P.) :		
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(제31조 제3항)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				
년 월 일 성명 (서명 또는 인) 보건복지부장관 귀하				
비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2.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 3. 의견제출서양식 다운로드 방법 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단, 정보→사업→검색창 '의견제출서'로 검색 후 다운로드			

의견제출서 (예시문)

1. 처분예정 제목		간호조무사 자격 자격정지 행정처분		
2. 당사자	성 명	○ ○ ○	(직종)자격번호	간호조무사 ○○○○호
	주민등록번호		현재 근무 의료기관명, 주소	
	처분서 수령 방식	☐ 우편 ☐ 전자우편 (전자우편 선택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4조의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)		
	우편수령가능 주 소	(주거지나 의료기관 중에서 1곳)		
	전자우편주소			
3.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받은 훈장, 포장, 표창 (대통령, 국무총리, 보건복지부 장관상만 해당)				
4. 사법처리내용	법원 또는 검찰청 사건번호	**지방검찰청, 2017형제*** **지방법원, 2017고약***, (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반드시 기재)		
	사법처리결과 및 일자	기소유예, 00년 00월 00일 벌금 500만, 00년 00월 00일		
5. 처분일자 및 의견제출	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, 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○○년 ○○월 ○○일 까지 행정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여 처분일자를 제출합니다.			
6 연락 가능한 연락처	- 전화번호 : ○○○ - ○○○ -○○○○○ - 휴대폰(H.P.) : ○○○ - ○○○ -○○○			
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(제31조 제3항)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				
년 월 일 성 명 (서명 또는 인) 보건복지부장관 귀하				

■ 의견서 제출기한 엄수

- ★ 제출기한 도과 시 의견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- ★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,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- ★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■ 제출 서류

가. 의견제출서

나. 사법처리결과 (필요시 제출)

- 불기소된 경우 : 불기소 결정서 및 이유서, 범죄사실
- 재판이 확정된 경우 : 판결문(약식명령서 포함)

■ 제출 방법

예시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의견제출서와 사법처리결과(필요시 제출)를 등기우편, 팩스(044-202-3925)로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〈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〉

■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

- 가.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- 나.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,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■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

가. 행정심판 청구

- 행정심판법 제27조(심판청구의 기간)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(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)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(☎ 110, www.simpan.go.kr 온라인, 우편 접수 가능)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나. 행정소송 제기

- 행정소송법 제20조(제소기간)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(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)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다. 집행정지 신청

-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, 중앙행정심판위원회·법원에 행정심판·소송의 본안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※ 주의 사항 ※

집행정지 인용 시 집행정지의 유효기간은 집행정지 결정문에 명기된 기간까지이므로, 그 다음 날부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져 별도의 공문 없이 당초 처분이 속행됩니다. 당사자는 처분을 이행하여야 하며, 항소(상고)제기 시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함(원고가 승소하여 행정청이 항소(상고)를 제기한 경우도 포함)을 알려드립니다.